

## 필독서프로그램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9.1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독서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독서”라 함은 위원회에서 필독서로 선정한 도서를 말한다.
2. “필독서연계교과”라 함은 필독서를 강의에 활용하는 교양 또는 전공의 교과목을 말한다.
3. “필독서연계비교과 프로그램”이라 함은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필독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필독서연계프로그램”이라 함은 필독서연계교과 및 필독서연계비교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독서인증제”라 함은 소정의 필독서연계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총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독서마일리지”라 함은 필독서연계비교과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참여의 열의나 횟수, 수상 실적 등에 따라 부여하여 소정의 합계에 도달할 경우 장학포인트(S-머니)로 전환되는 마일리지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술정보원장, 교양대학장, 미래교육혁신원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별 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독서의 선정
2. 필독서연계교과의 개발
3. 필독서연계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4. 필독서연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독서인증제의 운영
6. 독서마일리지의 운영
7. 필독서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8. 기타 필독서연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제4조의 각 호 사항에 관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필독서의 선정 및 독서지도)** ① 도서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정보원은 선정도서를 종별로 일정 권수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②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매 학년 초 일정량의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③ 학술정보원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필독서연계교과의 개발 및 운영)** ① 교양대학장은 필독서가 교양교과에 활용되도록 필독서연계교양교과 개발계획서(이하 “교양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처장은 필독서와 연계된 전공교과목을 발굴하고 신규로 개발하도록 전공교육과정 수

립시 노력하여야 한다. 전공교육과정에 필독서연계 전공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교원은 위원회에 필독서연계전공교과 개발계획서(이하 “전공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필독서연계교과의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인증)** ① 학술정보원은 선정된 필독서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읽은 후 제출한 독후감을 대상으로 확인평가를 하며, 이를 위하여 필독서인증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는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독서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독서마일리지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독서연계비교과프로그램의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부여하는 마일리지는 그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② 학생행복처장은 위원회가 정한 필독서연계비교과프로그램별 마일리지가 장학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독서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기획예산팀-551, 2019.11.06)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